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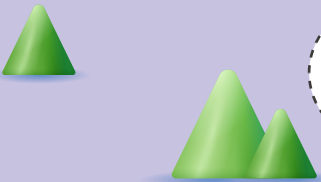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행복한 교실은 우리가 만들어요

본 자료에 사용된 이미지 및 영상은 AI를 활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CONTENTS



1 교육활동의 의미

2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과 유형

4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5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

6 교육활동 보호 Q&A

7 교육공동체의 약속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1

교육활동의 의미



자녀가 학교를 다녀오는 평화로운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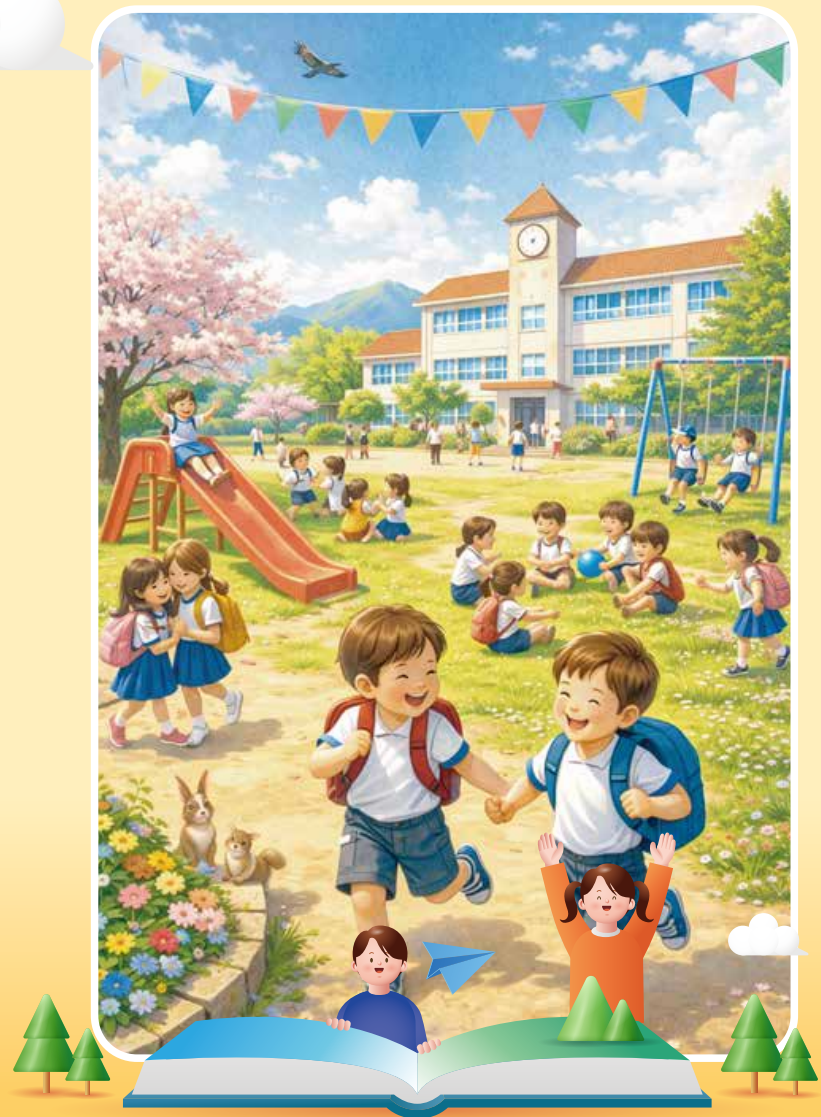
아침에 아이는 학교로 향합니다.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을 듣고,

친구와 대화하고, 운동장에서 뛰놀다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 아이에게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요?
- 학부모님께 학교는 어떤 공간인가요?
- 평소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교육활동이란?



학교 교육활동 = **장소(교내/교외)와 상관없이,**
학교장 교육계획에 따라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근거: [학교 안전법]제2조제4호





학교 교육활동의 목적



학교 교육활동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며, 올바른 학습자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인간상

- 자기주도적인 사람
- 창의적인 사람
- 교양 있는 사람
- 더불어 사는 사람

2026 경기교육 목표

-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학교가 기대하는 학습자상

- | | |
|--------------|----------------|
| • 원칙을 지키는 사람 | • 균형잡힌 사람 |
| • 소통하는 사람 | • 도전하는 사람 |
| • 사고하는 사람 | • 배려하는 사람 |
| • 지식이 풍부한 사람 | • 열린 마음을 지닌 사람 |
| • 탐구하는 사람 | |
| • 성찰하는 사람 | |

〈출처: 경기도교육청, IB 이해하기, 2023〉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법



조언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상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

보상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주의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훈육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훈계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근거: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호: 신체적 학대, 제5호: 정서적 학대, 제6호: 방임 행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2

교육활동 보호의 필요성





학교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현실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이 장난을 반복하자 담임교사가 주의를 주고, 그럼에도 반복하자 이름표를 칠판에 붙이며 방과후 교실 청소를 하게 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를 **체벌**이라고 보고, 교사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날부터 학교에 **담임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아이를 등교시키지 않았다.



대법원은 보호자가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담임교사의 직무수행 전체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라며 항소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2023두37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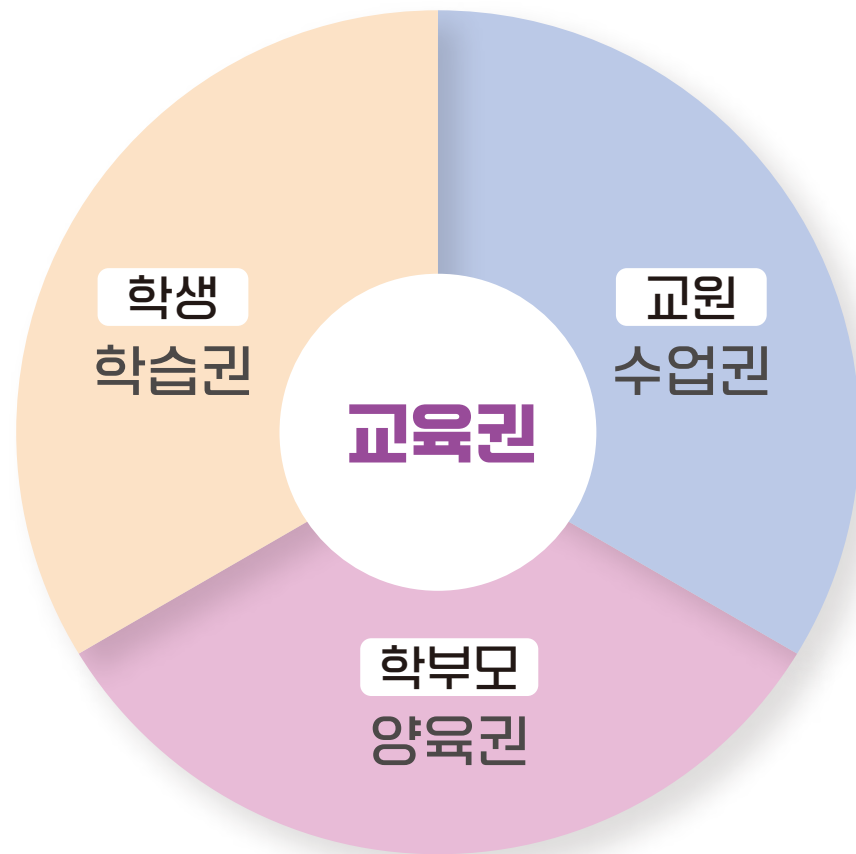




교육 주체의 교육권과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 💡 **학생**에게 **학습권**, **학부모**에게 **양육권**,
교원에게 **수업권**이 있습니다.
- 💡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 💡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공동체는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 ① 학교 교육활동에의 성실한 참여
- ② 학생의 학교생활, 인성교육, 생활지도
- ③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연구활동 존중
- ④ 학교문화 회복과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 ⑤ 타 학생의 학습권 존중
- ⑥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지원
- ⑦ 보호자의 학생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 ⑧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 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⑩ 학교의 교육활동과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 개진

근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7조(권리와 책임)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공동체 약속 (다산한강초, 2025)



학생

- 모든 친구와 선생님을 존중하며, 차별과 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규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학교 시설과 공공물을 소중히 다루고, 깨끗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키며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 나와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 시 즉시 선생님께 알리겠습니다.

학부모

- 자녀의 인성교육에 모범이 되어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학교 교육활동에 협조하겠습니다.
- 교사의 교육활동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에 동참하겠습니다.
-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생활습관과 학습태도를 지도하겠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교육에 힘쓰며, 자녀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학부모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교직원

-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동료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습니다.
- 수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학생의 마음을 공감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go_edu/223811908247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학부모)는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존중과 협력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중요합니다”

- 💡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보호자의 의무 등, 2026.3.1. 시행 예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의무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학교에서 일시적인 분리가 가능합니다”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가 가능합니다”

- 💡 학교의 장과 교원은 ...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 학교의 장은 ...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노력



“교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개념과 유형





왜 '교육활동 침해'인가?



- ➔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면 교육현장에 큰 피해가 되므로 교원지위법에서는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 ➔ 교원 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에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입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주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법적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교원지위법)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1. (법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 범죠행위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 침해주체: 소속 학교의 학생, 보호자 및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람
- 💡 침해대상: **교육활동 중인 교원**(공·사립 교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
- 💡 침해유형: 「교원지위법」 제19조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무고, 협박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손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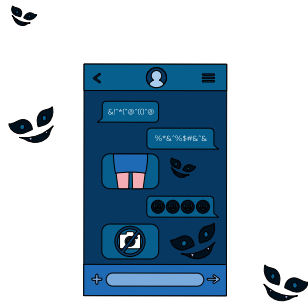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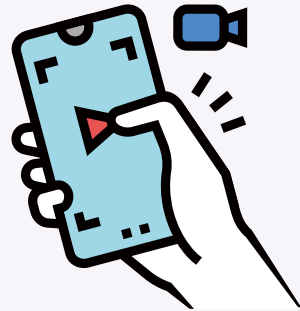
성폭력 범죄



불법정보 유통행위



형사처벌 범죄행위 (불법녹음)



형사처벌 범죄행위 (스토킹)



형사처벌 범죄행위 (개인정보 유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성희롱,
부당한 간섭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교육활동중인
교원의 영상, 사진,
음성 무단 배포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사례



명예훼손 및 모욕

공연(公然)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폐하거나 전파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명예훼손) 및 교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행위(모욕)



- ➔ 학급 학부모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맘카페에 “O학년 O반 담임, 애들을 편애한다, 자질이 없다”는 등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폐하여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
- ➔ 다른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보고 있는 복도나 교무실에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외모 비하 등의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경우 (모욕)

*공연성의 의미 :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충족함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무단 배포 및 합성

교원의 영상 등을 촬영·녹화·녹음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합성(딥페이크)하는 행위



AI 생성 이미지(Google Gemini)

- ➔ 보호자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하여 그 내용을 카페나 유튜브에 게시
- ➔ 학생이 수업 중인 교원의 얼굴을 촬영 후 합성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무단 배포(딥페이크)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행위의 경우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형사 처벌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모두에 해당
- 딥페이크행위는 불법촬영하거나, 제작하거나,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거나 각각 모두 위반행위이며, 성폭력범죄, 성희롱에도 해당





교육활동 침해 사례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자율 균형 미래

불법정보 유통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AI 생성 이미지(Google Gemini)

- ➔ 원격 수업 중 채팅창에 교원에 대한 음란한 문언, 사진 등을 게시한 경우
- ➔ 단체 채팅방, 인터넷 카페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 ➔ 교원에게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해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소리, 문자,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사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AI 생성 이미지(Google Gemini)

- ➔ 보호자가 학생의 취향에 맞는 급식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항의하는 경우
- ➔ 보호자가 학생의 태만으로 인한 결석 등을 병결로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 학교에서의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교사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례



반복적 부당한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당하게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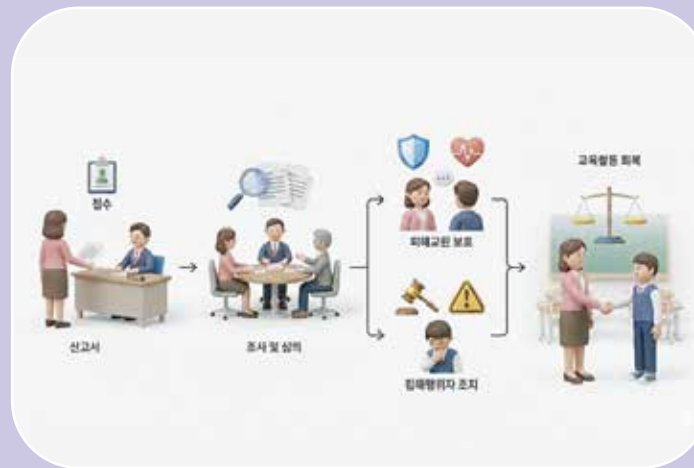


- ➔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나 문자로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 ➔ 시험 출제 경향의 요구, 수행평가 점수를 몰려달라는 요구
- ➔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게 부당한 요구
- ➔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변경, 추가, 삭제 요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유 해당)

보호자의 이의 제기 및 의견 제시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 측면이나, 이러한 과정에서 모욕적, 폭력적 행동 등을 할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넘어서는 것**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 처리 절차



신고접수 및 초기대응 학교

- 교육현장 안정화
- 피해교원 보호조치
- 교육지원청 보고

보호조치 및 사안조사 교육지원청

- 사안발생 보고서 검토
- 사안조사
- 조사보고서 작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

보호조치 결정 및 처분 교육지원청

- | | |
|---------------------|---------------|
| ① 분쟁 조정 시(희망 시) | ② 조치 심의 시 |
| - 전문가 등 자문 가능 | - 침해 인정 여부 심의 |
| - 성립 시 : 분쟁조정합의서 작성 | - 조치 심의·의결 |
| - 결렬 시 : 조치 심의로 전환 | - 조치결과 서면 통보 |



필요 시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이의제기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민사소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목적

-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위원회 심의 전문성 확보

기능

-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미래교육의 중심 **자율**
새로운 경기교육 **균형**
미래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결정의 경우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음
-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아니나 학생의 행위가 학교 규칙 위반행위로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5조)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

※ ‘조치 없음’ 결정 시 학생 조치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조치할 수 없음

➔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6조)

①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②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





피해교원 보호조치



➔ 피해교원 보호조치(교원지위법 제20조 제1항)

- ① 특별휴가(5일 이내)
- ② 심리상담 및 조언
-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④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비정기 전보 요청 등)

➔ 보호조치 비용(교원지위법 제20조 제5항)

-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
- 교원이 도교육청에 치료비 등을 선지급 요청할 경우, 도교육청은 비용을 부담한 후 침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의 제기 및 불복



침해자(학생 및 보호자 등)

➔ 행정심판, 행정소송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교육장이 한 조치(교원지위법 제25조 2항 각 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 :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관련 교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으로 판단된 경우

- 행정심판, 행정소송



5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의 고뇌(염려와 걱정)



- ① 자신을 **문제 학부모**라고 여길까 봐
- ② 자녀의 부진을 **학부모 탓**이라고 할까 봐
- ③ 자녀의 문제를 선생님에게 **확인받고 싶지 않아서**
- ④ 학부모와 자녀의 **필요를 학교가 잘 모르니까**
- ⑤ 선생님의 **권위적인 모습**이 싫어서
- ⑥ 선생님은 학부모인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 ⑦ 학교는 나의 **죄책감을 자극하므로**

[출처] 김성경 외, “소통왕! 학부모를 부탁해”, 수업디자인연구소, 2020





보호자 역할의 변화 공유, 상호 존중 문화의 형성



자녀의 성장 단계가 바뀌면, 부모의 역할도 '통제'에서 '동반'으로 이동합니다.



보호자의 역할 변화 로드맵

초등이전 보호자(안전,돌봄)



양육자(습관,생활기반)

초등시기 훈육자(규칙,경계세우기)



격려자(자율,도전 지지)

중등시기 상담자(대화,조율)



동반자(존중,협력)

- ① 초등 이전: 규칙과 안전 우선, **훈육(경계 설정)** 중심
- ② 초등 시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 이치 설명** 강조
- ③ 중등 시기: 독립적 개체로서 대우, **존중, 상담**을 통해 **상호의존 관계 형성**
[보호자 역할 변화를 학부모와 교사가 공유하고 상호 존중 문화 형성해야]

[출처] 김성경 외, “소통왕! 학부모를 부탁해”, 수업디자인연구소,2020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태도



학생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기
- 교육활동 침해의 해악 알기
- 바람직한 학습자상 알기
- 선생님과 좋은 관계 만들기
- 바른 학습자상으로 성실한 학습문화 실천

학부모

-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지기
- 바람직한 교육활동 참여 방법 알기
- 보호자의 민원 제기 시 유의사항 인지
- 모든 학생의 학습권 존중하기

교직원

-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예방교육 실시
-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재정립하기
- 상호 존중의 교육활동 문화 조성





학부모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갈등 해결



①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와의 갈등 중재

- ➡ 학부모 갈등을 학교 내부의 '비공식적 접근'--> '제도적 시스템(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전문가 개입)'과 '회복적 대화 모델'을 통해 해결 진행
- ➡ 전문가 개입: 화해중재단,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진행 방식으로 소통
- ➡ 회복적 대화 모델: 학교-학부모 간 신뢰 서클로 회복적 정의 실현

② 학부모회를 통한 의견 수렴-공적 소통 구조의 정립

- ➡ 학부모 대의원회 활성화 건의, 건의 사항 이행 여부 즉각 공유
- ➡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체험활동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부모 간의 교류, 의견 수렴



6

교육활동 보호 Q&A





이럴 때 이렇게 소통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자녀가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경우



질문 자녀가 수업 중 교사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요.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① **자녀 안정시킴 + 사실 확인**
“왜 그랬어?” 보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 처럼 질문합니다.
- ② **책임 가르치기(변명 줄이기)**
잘못이 있다면 행동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 ③ **회복(사과) 방법을 구체화**
사과는 “미안해” 한마디가 아니라 ① 무엇을 했는지 ② 왜 문제인지 ③ 어떻게 고치겠는지를 포함해 준비합니다.
- ④ **재발 방지 약속(실행 계획)**
같은 상황이 오면 쓸 대체 행동 2~3개를 정합니다. 예) 자리 이동, 손 들고 말하기, 10초 멈추기, 상담 요청 등
- ⑤ **학교와 협력(소통의 톤)**
담임 교사 / 학교와 연락할 때는 “문제 해결과 관계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대응은 피하기

- “선생님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처럼 **책임 전가**부터 하기
- 사실 확인 전에 **과도한 질책/폭발**하기
- “다신 학교 가지 마”처럼 **관계 단절**로 몰기
- 사과를 “형식”으로만 끝내고 **재발 방지 없이 마무리**하기

필요한 경우 학교 절차(면담, 교육적 조치 등)에 협조하되, 자녀가 위축되지 않게 지지적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소통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자녀가 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질문 자녀가 수업 방해를 하며 교사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해요.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① **자녀 안정시킴(감정 낮추기)**
자녀가 방어적이면 대화가 끊기니 **톤을 낮춰** 시작합니다.
- ② **절차 이해: ‘낙인’이 아니라 ‘확인’ 과정임을 설명**
누가 ‘맞는지’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합니다.
- ③ **사실 정리: 시간,장소,말,행동을 ‘기록’으로 맞추기**
자녀 주장도 “그럴 수 있다”로 열어두되, 근거(기억/메시지/상황)를 함께 확인합니다.
- ④ **학교 소통: ‘대립’이 아니라 ‘협력’ 내용으로 연락**
담임 교사와 연락 시의 입장-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하고, 아이가 다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 ⑤ **면담 대비 설명 포인트 정리**
자녀 입장 설명, 부모 조치 전달, 학교에 협조하는 방향

이런 대응은 피하기

- 사실 확인 전, 교사, 학교 먼저 비난하기
- 자녀 말만 듣고 즉시 결론 내리기
- “너 때문에 망했다”라 낙인 찍기, 과잉 질책하기
- 절차를 ‘처벌’로만 보고 소통을 끊기

핵심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사실 확인 → 관계 회복 → 재발 방지’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소통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범위가 궁금해요.



퇴근 후, 보호자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해 자녀 생활·학습 상담을 이어가던 중 감정이 격해져 거친 말·반복 연락·압박성 표현이 오갔습니다. 이때도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 핵심 판단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1. 상담 내용이 학생의 학업·생활지도 등 '학교 업무'와 연결되는가
2. 교사가 상담을 '교사 역할'로서 수행하고 있었는가 (공식/비공식 채널 여부와 무관)
3. 대화의 목적이 민원·상담 등 교육 관련 사안 해결에 있었는가

• **한 줄 결론:** 위 조건에 가까울수록 교육 관련 상담 상황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소통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자녀가 안전사고가 난 경우



제 아이가 학교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절차 및 출결, 그리고 보상 관계에 대하여 담임 선생님께 문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학생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님께서서는 자녀가 다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다가 목소리가 커져 선생님과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먼저 아이에게 연락을 받은 즉시 하는 것보다, 좀 진정을 한 뒤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업무시간 중에 학교 대표전화를 통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거나, 방문 약속을 하고 기일을 지정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소통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우



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는 학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반에 대한 문의와 제 아이도 피해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담임 선생님 혹은 학교폭력업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다보면 친구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무조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 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이렇게 소통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학교와 생활지도로 인해 갈등이 생긴 경우

Q

제 아이의 교복 착용에 대하여 학교에서 지적을 받아 생활지도 관련하여 학교와 상의를 하고 싶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A

- 학부모님은 교원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권리와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리, 그리고 학생을 지도하고 징계, 평가할 권리를 존중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먼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자녀의 교복 착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약속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모두의 약속



경기교육은 약속합니다.

학교는 '내 아이'만의 공간이 아니라
경기도의 모든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보호자는 학교가 학생의 배움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존중과 협력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대화로 풀고, 절차를 따르며,
아이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안전 최우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갈등은 대화와 관계 회복으로 해결

디지털 공간에서도 예의와 책임을 지킴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 학교에 방문할 때는 미리 약속합니다. ●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 1 학교에 담당 교사와 전화 예약 후 방문
- 2 카카오톡 채널 또는 e 알리미 이용
예약 후 방문(개별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 3 나이스 학부모 상담 예약 후 방문
(서비스 제공 예정)

학부모의 학교 방문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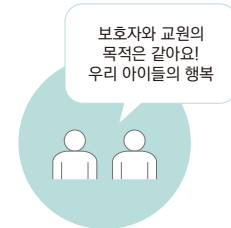
학교 방문 절차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예약을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행정실(또는 경비실)에
가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방문증을 패용하고
민원면담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선생님과 면담합니다.

보호자와 교원의
목적은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





학부모 소통 시스템 개선



학부모 소통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소통 시스템 개선

- 1 학부모 상담 사전 예약제 등 시스템 개선
- 2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공개 제한을 통한 교육권 보호
- 3 수업 중인 교사에게 전화가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학생, 학교 양쪽의 입장 모두 듣고 판단하기





교학상장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 상호 존중과 교학상장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요. •

학교에 문의하기 전에!

- 1 문의는 근무 시간 내에
- 2 상담은 약속 시간을 정해서
- 3 교육활동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에게 맡겨주세요.



민원 제기 전에!

- 1 감정을 가라앉혀요.
- 2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 3 전화나 서면으로 먼저 상담해요.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때 우리 아이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행복**할 때 올바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책임**지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 경기교육**」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요.



경기도교육청
[생활 교육 과]

